

시청자위원회 운영 기준



제1조 (목적)

이 기준은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(이하 '당사')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주관)

시청자위원회의 운영 및 기준 제·개정은 방송사업지원팀에서 주관한다.

제3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,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임기 종료 시 차기 위원장직을 수행한다.
- ④ 시청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.
- ⑤ 시청자위원의 임기는 선임 월부터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.
- ⑥ 임기만료 전 사임 등을 이유로 시청자위원회의 총 위원 수가 10인 미만 이 되는 경우 즉시 제4조에 따른 위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.

제4조 (위원 선정)

- ① 후보자 공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.
- ② 후보자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며, 후보자 공모 결과 후보자가 없는 분야가 있거나 후보자 수가 너무 적은 경우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후보자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단체의

추천을 받아야 한다.

- ④ 시청자위원회는 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통통신위원회 규칙」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분야들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 대하여 시청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하되, 특정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- ⑤ 시청자위원회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문성, 연령,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관련 분야에 충분한 경력을 보유한 자
 - 2. 시청자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자
- ⑥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후보자 추천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
 - 1.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
 - 2.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(교육공무원, 법관 제외)
 - 3. 정당법에 의한 당원
 - 4. 당사와 상품판매 거래 중인 협력사의 대표자
 - 5.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, 자회사에 재직 중인 자
- ⑦ 시청자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사내 준법지원인 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가 포함된 6인 이상의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되, 선정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- 위원장 : 시청자위원회 주관부서 담당 임원
 - 위원 : 방송사업지원팀장, 컴플라이언스, 법무, 심의, 고객 관련 부서장
- ⑧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이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후보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, 선정위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선정위원을 선정위원회에서 제외시키고 대체 선정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만약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직급의 다른 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.

제5조 (권한과 직무)

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.

1.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2.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3.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

제6조 (운영)

- ①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, 방송사업지원팀 주관하에 정기회의는 매월 1회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- ②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의는 오프라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, 시청자위원회에서 의결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④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 (당사의 의무)

- ①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② 당사는 월간 시청자위원회 운영 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당사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

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
- ④ 시청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 (보수 지급 기준)

시청자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시청자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,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위원장 : 월 60만원 (직책수당 10만원 포함)
- 위 원 : 월 50만원
- 서면 의견제출로 회의 참석 같은 시: 30만원 (직책수당 10만원 별도)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- ① 이 기준은 2017. 09. 01. 제정, 시행한다.
- ② 이 기준은 2018. 10. 01. 개정, 시행한다.
- ③ 이 기준은 2021. 11. 15. 개정, 시행한다.
- ④ 이 기준은 2022. 11. 30. 개정, 시행한다.
- ⑤ 이 기준은 2025. 8. 1. 개정, 시행한다.